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년 3월 16일

회 사 명 : (주)코람코자산운용
(영문명) Koramco Asset Management Co., 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koramcofund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, 2층 (삼성동, 골든타워)
(전 화) 02-787-0101

대 표 이 사 : 박형석

담 당 자 : (직 책) 경영지원팀장
(성 명) 김 성 우 (전 화) 02-787-0160

작 성 자 : (직 책) 차 장
(성 명) 장 효 준 (전 화) 02-787-0267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9호)

주주총회소집 결의

1. 일시	2021.03.31	
2. 장소	본사 1층 회의실	
3. 의안 주요내용	보고안건 -제1호: 제12기 감사보고 -제2호: 제12기 영업보고 결의안건 -제1호: 제12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-제2호: 현금 배당의 건 -제3호: 사외이사 선임의 건 -제4호: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	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2021.03.16	
-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1
	불참(명)	-
-감사(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) 참석여부	-	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	

【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】

성명	생년월일	임기	신규 선임여부	주요경력	현직	최종 학력	국적
송창영	71.5.1	1년	재선임	- 금융감독원 법무실 변호사 -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	법무법인 세한 변호사	대졸	대한 민국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상법,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의안 주요내용”은 의안 안건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, 사업 목적변경, 이사.사외이사의 선임, 감사(감사위원회 위원포함)선임, 집중투표제 도입.폐지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.
- 주3) 임원선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에 “상근이사 ○명, 비상근이사 ○명, 사외이사 ○명, 감사위원 ○명, 감사 ○명 선임”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, 임원해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에 해임임원별

로 각각 해임사유,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
- 주4)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란에 기재한다.
- 주5) “신규선임여부”는 “신규선임” 또는 “재선임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6) “주요경력”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7) “현직”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,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(상근·비상근이사, 사외이사, 감사위원, 감사)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,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·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.
- 주8)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의 “사외이사 여부”는 “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” 또는 “사외이사인 감사위원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9)【감사선임 세부내역】의 “상근여부”는 “상근” 또는 “비상근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10)【집중투표제 도입·배제 세부내역】은 도입하는 경우 “변경 전”에 “배제”, “변경 후”에 “적용”을 기재하고,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.
- 주11)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